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미애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1147
----------	-------

발의연월일 : 2026. 9. 8.

발 의 자 : 김미애 · 우재준 · 임종득
엄태영 · 이현승 · 김태규
김대식 · 유상범 · 김재섭
최보윤 · 이종욱 · 조정훈
서천호 의원(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수급 자격 등을 확인하여 에너지이용 소외계층에게 에너지이용권을 발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에너지이용권의 발급은 당사자의 신청을 전제로 하고 있어 에너지이용 소외계층이 에너지이용권에 대해 알지 못하거나 신청하지 못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에너지이용권을 발급할 수 있는 근거가 미비하여 보호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음.

또한 폭염, 혹한 등이 발생하는 경우 에너지이용량이 많이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에너지이용 지원금이 탄력적으로 조정되지 않아 실효적인 지원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에너지이용권 수급 자격이 확인된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직권으로 에너지이용권을 발급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기상상황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추가적인 에너지이용권을 발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에너지이용 소외계층의 보호가 두텁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16조의3).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에너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의3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5항을 제6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6항(중전의 제5항) 중 “제4항까지”를 “제5항까지”로 한다.

다만, 에너지이용권 발급을 신청하기 어렵거나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경우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에너지이용권을 발급할 수 있다.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기상상황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에너지이용권 수급자에게 에너지이용권을 추가로 발급할 수 있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6조의3(에너지이용권의 발급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에너지이용 소외계층에 속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의 신청을 받아 에너지이용권을 발급할 수 있다. <단서 신설>	제16조의3(에너지이용권의 발급 등) ① ----- ----- ----- ----- ----- ----- ----- 다만, 에너지이용권 발급을 신청하기 어렵거나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경우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에너지이용권을 발급할 수 있다.
② ~ ④ (생략) <u><신설></u>	② ~ ④ (현행과 같음)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기상상황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에너지이용권 수급자에게 에너지이용권을 추가로 발급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에너지이용권의 신청 및 발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제5항까지----- ----- ----- ----- -----

다.	
----	--